# 학교법인송담학원

## 2022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구 분 | 이사 | 감사 |
|---|---|---|
| 임원정수 | 8인 | 2인 |
| 재적임원 | 8인 | 1인 |
| 참석임원 | 7인(대면 2인, 원격 5인) | 1인(대면 1인) |

1. 일 시 : 2022.04.26(화), 11:00~12:00, (회의소집 통보일:2022.04.14.)
2. 장 소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원격회의(Zoom Live)
3. 참석현황
   - ▫ 대면참석이사 : 최영철, 최성식 (2인)
   - ▫ 원격참석이사 : 오명환, 신승남, 김정훈, 김존형준, 정기수 (5인)
   - ▫ 불참이사 : 한태욱 (1인)
   - ▫ 대면참석감사 : 이상철 (1인)
   - ▫ 불참감사 : 김동혁 (1인)
   - ▫ 배 석 : 미래혁신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법인담당 (4인)
   - ▫ 공개방청 참석자 : 용현율(민주노총 대학노조 용인예술과학대학지부 사무국장), 조혜은(사회복지학과 학생) (2인)
4. 안건

가. 심의 안건

- ▫ 제1호 :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안)
- ▫ 제2호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 ▫ 제3호 : 대학 규정 개정(안)
- ▫ 제4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 제5호 : 정관 개정(안)

5. 의장의 성명 : 최영철 이사장
6. 개회 : 의장 임원 성원을 확인한 후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7. 회의 주요내용

가. 심의 사항

▫ 제1호 :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안)

[ 안건요지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안) 이사회 심의·의결

| 관 | 수입 금액(천원) | 관 | 지출 금액(천원) |
|---|---|---|---|
| 등록금수입 | 22,315,751 | 보수 | 18,997,885 |
| 전입및기부수입 | 7,856,198 | 관리운영비 | 3,372,602 |
| 교육부대수입 | 463,597 | 연구학생경비 | 10,754,363 |
| 교육외수입 | 217,083 | 교육외비용 | 119,768 |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 4,051,512 | 투자와기타자산 지출 | 198,747 |
| 고정자산매각수입 | 2,315 | 고정자산매입지출 | 1,225,026 |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1,342,557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1,580,624 |
| 합계 | 36,249,014 | 합계 | 36,249,014 |

의장 :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과 외부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회계사로부터 「2021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과 위반 사항 없음을 확인 후, 의장을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

간서명 최영철 (서명) 최성식 (서명) 이상철 (서명)

□ 제2호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 안건요지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이사회 심의·의결

| 관 | 수입 금액(천원) | 관 | 지출 금액(천원) |
|---|---|---|---|
| 등록금수입 | 0 | 보수 | 4,386 |
| 전입및기부수입 | 100,000 | 관리운영비 | 20,619 |
| 교육외수입 | 10,889 | 교육외비용 | 0 |
| 투자와기타자산수입 | 0 | 전출금 | 93,000 |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18,801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11,685 |
| 합계 | 129,690 | 합계 | 129,690 |

의장 :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과 외부 삼덕회계법인 박철훈 회계사로부터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과 위반 사항 없음을 확인 후, 의장을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

□ 제3호 : 대학 규정 개정(안)

[ 안건요지 ]

◆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 대학 사무직제 변경(안) 이사회 심의의결

의장 : 위 안건을 발의하고 미래혁신처장으로부터 「대학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

□ 제4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안건요지 ]

◆ 정관 제21조의3(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사회 심의·의결 하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부총장 이현미, 용인예술과학대학교 前교원 마석범 2인 추천

의장 :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으로부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

□ 제5호 : 정관 개정(안)

[ 안건요지 ]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안) 이사회 심의·의결

| 조항 | 개 정(안) | 비고 |
|---|---|---|
|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 ⑤ 생략<br>⑥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2인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추천한 감사로 선임하고. 1인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5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
| 제31조의4 (대학평의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 한다.<br>1.~6. 생략<br>7. 삭제 | |
|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 한다.<br>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br>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br>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제5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인 이상 포함할 것<br>2.~3. 생략<br>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간서명 (서명) (서명) (서명)

| 조항 | 개 정(안) | 비고 |
|---|---|---|
| 제58조 (징계의결의 기한) |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br>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 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제59조의3 (징계의결 요구와 통지)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복무규정 제55조, 제56조,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다만, 진상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을 요구 한다.<br>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br>③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다. | |
| 제61조 (징계의결) | ① 생략<br>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기록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결의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 하여야 한다.<br>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br>④ 생략<br>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61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징계를 요구 및 재심의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 |
| 제64조 (운영세칙) | ①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br>②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부 칙 | 부 칙<br>(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22년 1차 이사회-2022.04.26.) | |

의장 : 위 안건을 발의하고 사무처장으로부터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안건요지와 같이 원안으로 가결함.

□ 제6호 :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대표자 선임(안)

[ 안건요지 ]

◆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대표자 선임

◆ 최영철 이사장, 최성식 이사, 이상철 감사 3인

간서명 최영철 (서명) 최성식 (서명) 이 상 철 (서명)

의장 : 위 안건을 설명하고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대표자 선임(안)」에 대한 이사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요지와 같이 가결함.

8. 폐회 선언 : 의장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12시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2년 04월 26일

| | | | |
|---|---|---|---|
| 학교법인송담학원 | 이 사 장 | 최 영 철 | (서명) |
| | 교육경험 이 사 | 최 성 식 | (서명) |
| | 교육경험 개방이사 | 오 명 환 | (서명) |
| | 교육경험 이 사 | 신 승 남 | (서명) |
| | 개방이사 | 김 정 훈 | (서명) |
| | 이 사 | John Hyungjoon Kim (김존형준) | (서명) |
| | 교육경험 이 사 | 정 기 수 | (서명) |
| | 교육경험 이 사 | 한 태 욱 | (서명) |
| | 추천감사 | 이 상 철 | (서명) |
| | 공인회계사 감사 (CPA) | 김 동 혁 | (서명) |
| 이해관계자 공개방청 | 대학노동조합 추천 참석자 | 용 현 율 | (서명) |
| | 사회복지학과 | 조 혜 은 | (서명) |

현장 스케치

